

높은뜻광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기본규정

2018.12.01. 제정
2023.09.10. 1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높은뜻광성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빙의 원칙) 청빙의 모든 과정은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2장 청빙

제3조(청빙의 시기)

1. 청빙은 담임목사의 임기종료나 중도사임, 기타사유로 부재 시 또는 부재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다.

제4조(청빙위원회의 구성)

1. 청빙위원회의 구성은 시무장로 3명, 장로 1명, 권사 1명, 안수집사 1명, 서리집사 2명(남/여), 청년마을 2명(남/여) 등 10명으로 한다.
2. 시무장로 3명, 장로 1명, 서리집사 2명은 당회에서 직접 임명하고, 권사, 안수집사, 청년마을의 대표는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5조(청빙위원회의 구성 시기)

1. 기존 담임목사의 임기종료의 경우, 임기종료 1년 6개월 전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종료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청빙공고, 2개월 이전에 후임자 선정을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존 담임목사의 임기종료 외,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청빙 방식) 청빙방식은 공모형으로 한다.

제7조(청빙대상자 기본자격조건)

1. 총회에서 인정하는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교회”라는 높은뜻 정신의 목회철학을 계승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타 교회의 위임목사는 청빙에서 제외한다.
4. 현 담임목사와 당회원, 청빙위원의 친인척(범위는 민법상에 준함)은 담임목사 청빙에 지원할 수 없다.
5. 구체적 자격요건은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한다(연령, 성별, 국적, 목회경력, 기혼여부, 학력,

배우자 신상, 기타).

제8조(청빙의 과정)

1.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빙 기본규정과 청빙위원회 회칙에 따라 “청빙위원회 운영세칙”을 규정하고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 청빙 기본규정, 청빙위원회 회칙, 청빙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구체적인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다.

제9조(최종후보자의 결정)

1. 청빙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후보자를 2인 이상 3인 이하로 선발한다.
2. 최종후보자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교 등을 실시한다(순서는 제비뽑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최종순위후보자 추천단의 투표로 선호도 순위를 결정한다.
4. 최종순위후보자 추천단은 시무장로, 시무성료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성료안수집사, 시무권사, 시무성료권사, 당해의 순장 및 제직부서 부차장, 당해의 청년마을 운영위원 및 리더로 구성한다.
4. 당회는 청빙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전형 결과와 최종순위후보자 추천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후보자를 확정한다.

제10조(최종청빙대상자의 선정)

1. 최종청빙대상자는 공동의회의 승인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2/3 이상 찬성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선정한다.
2. 승인투표는 당회가确定的한 최종후보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가 유효투표수의 2/3 이상이 나오면, 그것으로 종결한다.
3.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가 유효투표수의 2/3 이상 나오지 않으면, 2순위, 3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3. 3순위 후보자까지도 2/3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회는 청빙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1조(담임목사 청빙 기본규정 개정) 청빙 기본규정의 개정은 당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12조(기타사항) 담임목사 청빙 기본규정 및 청빙위원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